

예 산 총 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40,386,175	28,211,585
일반회계	862,434,940	25,873,048
특별회계	77,951,235	2,338,537
공기업특별회계	62,685,808	1,880,574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8,091,474	842,744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4,594,334	1,037,830
기타특별회계	15,265,427	457,96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00	4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90,288	29,709
의료보호특별회계	3,291,357	98,741
수질개선특별회계	866,440	25,993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5,142	454
주택사업특별회계	300,700	9,021
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9,800,000	294,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 해당없음 " 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조서 "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 11,411,392 "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 37,350,000 "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 기준인건비 " 에 포함된 경비,재무활동비,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